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보다 나은 해양수산부

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 구현

해양수산부

음주운항 처벌, 더욱 강화됩니다!

해양수산부

해사안전법 (2020. 5. 19. 시행)

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

현행
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
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

변경
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	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0.20% 미만	혈중알코올농도 0.20% 이상
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	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	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
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

현행

횟수와 관계없이
3년 이하 징역이나
3천만 원 이하 벌금

변경

2회 이상 위반 시

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
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
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강화

현행

횟수와 관계없이
3년 이하 징역이나
3천만 원 이하 벌금

변경

1회 거부 시

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

2회 이상 거부 시

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
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
선박직원법 (2020. 5. 19. 시행)

음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

현행
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
1차 위반 : 업무정지(3개월)
2차 위반 : 업무정지(1년)
3차 위반 : 면허취소

변경
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

1차 위반 시	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
업무정지 6개월	면허취소

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

면허취소

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

현행

1차 위반 : 업무정지(3개월)
2차 위반 : 업무정지(1년)
3차 위반 : 면허취소

변경

1회 거부 시

업무정지 6개월

2차 거부 시

면허취소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2020. 5. 5. 시행)

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

현행

규정 없음

변경

상해

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
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
사망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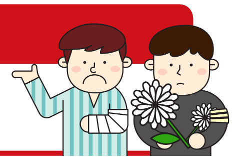
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